

## ● 직 제 규 정(0204)

제정 1997. 12. 1. 규정 제 2호	개정 2008. 11.11. 규정 제286호	개정 2015. 12. 31. 규정 제475호
개정 1998. 2. 25. 규정 제 33호	개정 2008. 12. 18. 규정 제288호	개정 2016. 5. 9. 규정 제485호
개정 1998. 8. 17. 규정 제 41호	개정 2009. 2. 2. 규정 제294호	개정 2016. 12. 28. 규정 제513호
개정 1998. 12. 11. 규정 제 46호	개정 2009. 4. 1. 규정 제318호	개정 2017. 9. 28. 규정 제520호
개정 1999. 8. 26. 규정 제 64호	개정 2009. 7. 1. 규정 제327호	개정 2018. 1. 24. 규정 제532호
개정 2000. 3. 31. 규정 제 80호	개정 2010. 1. 25. 규정 제337호	개정 2018. 9. 10. 규정 제541호
개정 2002. 2. 4. 규정 제106호	개정 2010. 3. 31. 규정 제344호	개정 2019. 1. 24. 규정 제546호
개정 2002. 12. 4. 규정 제113호	개정 2010. 7. 27. 규정 제355호	개정 2019. 3. 29. 규정 제548호
개정 2003. 3. 13. 규정 제121호	개정 2010. 10. 13. 규정 제365호	개정 2019. 5. 8. 규정 제555호
개정 2003. 8. 8. 규정 제126호	개정 2010. 12. 29. 규정 제367호	개정 2019. 5. 9. 규정 제556호
개정 2004. 1. 13. 규정 제136호	개정 2011. 11. 28. 규정 제379호	개정 2019. 8. 26. 규정 제570호
개정 2004. 3. 4. 규정 제138호	개정 2012. 12. 05. 규정 제408호	개정 2019. 9. 27. 규정 제573호
개정 2004. 7. 5. 규정 제146호	개정 2012. 12. 21. 규정 제409호	개정 2019. 12. 31. 규정 제579호
개정 2005. 4. 6. 규정 제172호	개정 2013. 6. 21. 규정 제424호	개정 2020. 1. 29. 규정 제581호
개정 2005. 8. 18. 규정 제186호	개정 2013. 11. 29. 규정 제433호	개정 2021. 1. 20. 규정 제614호
개정 2005. 8. 18. 규정 제186호	개정 2013. 12. 24. 규정 제434호	개정 2021. 9. 28. 규정 제634호
개정 2006. 9. 19. 규정 제209호	개정 2015. 1. 15. 규정 제461호	개정 2022. 1. 27. 규정 제649호
개정 2007. 2. 2. 규정 제230호	개정 2015. 4. 29. 규정 제464호	개정 2022. 2. 24. 규정 제650호
개정 2007. 9. 28. 규정 제262호	개정 2015. 12. 7. 규정 제473호	개정 2022. 6. 3. 규정 제659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직제에 관하여는 조례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사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 장 구 성 원

**제4조(구성원)** 공사에 사장, 이사, 감사 및 직원을 둔다. <개정 98.8.17, 04.7.5, 05.4.6>

**제5조(임원의 구분)** 임원은 이사, 감사로 구분하고 이사는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05.4.6, 06.9.19>

**제6조(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본부장으로 보하며, 사장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인 본부장 중에서 부사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9.19, 15.1.15>

② 상임이사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장에게 직접 경영책임을 진다. <개정 06.9.19>

③ <삭제 06.9.19>

**제7조(비상임이사)** 공사에는 비상임이사를 두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98.10.31, 00.3.31, 02.1.2, 02.12.4, 05.4.6, 08.11.11, 09.2.2, 22.6.3>

**제8조(감사)** 감사는 청렴감사실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04.7.5, 15.4.29, 18.1.24>

**제9조** <삭제 98.8.17>

**제10조(직무대행)**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이사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의 순위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부사장이 있는 경우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없는 경우 제13조 기구표상의 직제 순으로 한다. <단서삭제 99.8.26. 개정 08.12.18, 15.1.15>

- 제11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경영·행정·기술), 연구직, 전문직, 임기제 전문직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05.8.18, 06.9.19, 07.9.28, 13.12.24, 15.1.15, 19.9.27>
- ② 일반직의 직급은 1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하며, 1·2급은 경영직으로, 3급 내지 6급은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구분한다. <신설 15.1.15>
- ③ 연구직은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15.1.15>
- ④ 전문직은 특1급, 전문위원, 가급 내지 마급으로 구분한다. <신설 15.1.15>
- ⑤ 임기제 전문직은 가급 내지 마급으로 구분한다. <신설 19.9.27>

**제12조(고문)** 공사는 필요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고문 및 비상근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 3 장 조 직

- 제13조(기구)** ① 공사에 경영기획본부, 전략사업본부, 주거사업본부, 도시개발본부, 경제진흥본부, 균형발전본부, 청렴감사실을 둔다. <개정 07.9.28, 08.12.18, 09.7.1, 10.1.25, 10.7.27, 11.11.28, 12.12.05, 15.1.15, 15.4.29, 15.12.31, 18.1.24, 19.9.27, 21.1.20>
- ② 경영기획본부에는 경영혁신처, 대외협력처, 총무인사처, 재무관리처, 인재개발원, 법무실을 둔다. <개정 07.9.28, 08.12.18, 09.7.1, 10.1.25, 11.11.28, 12.12.05, 13.11.29, 15.1.15, 15.12.31, 17.9.28, 19.9.27, 20.1.29, 21.1.20>
- ③ 전략사업본부에는 사업기획처, 판매총괄처, 기본주택추진단, 건설기술처, 도시주택연구소,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을 둔다. <개정 07.9.28, 08.12.18, 09.7.1, 10.1.25, 10.7.27, 11.11.28, 12.12.05, 13.11.29,

- 15.1.15, 15.12.31, 16.12.28, 17.9.28, 18.9.10, 19.9.27, 20.1.29, 21.1.20, 21.9.28., 22.1.27., 22.2.24.>
- ④ 주거사업본부에는 주택사업처, 미래주택사업처, 주거복지처, 주택관리처를 둔다. <개정 07.9.28, 08.12.18, 09.7.1, 10.1.25, 10.7.27, 12.12.05, 13.11.29, 15.1.15, 15.12.31, 16.12.28, 17.9.28, 19.9.27, 20.1.29, 21.1.20>
- ⑤ 도시개발본부에는 신도시기획처, 하남사업단, 용인사업단, 광명시흥사업단, 도시재생처, 신도시보상처를 둔다. <개정 07.9.28, 08.12.18, 09.7.1, 10.1.25, 10.7.27, 12.12.05, 13.06.21, 13.11.29, 15.1.15, 15.12.31, 16.12.28, 17.9.28, 19.9.27, 21.1.20, 22.1.27., 22.2.24.>
- ⑥ 경제진흥본부에는 산업단지처, 광고사업단, 판교사업단, 지역사업처, 복합사업처를 둔다. <개정 08.12.18, 09.7.1, 10.1.25, 10.7.27, 11.11.28, 15.12.31, 16.12.28, 17.9.28, 19.9.27, 21.1.20>
- ⑦ 균형발전본부에는 균형발전처, 남양주사업단, 고양사업단을 둔다. <신설 16.12.28, 17.9.28, 19.9.27., 22.1.27.>
- ⑧ 사장 직속으로 비서실, 안전품질단을 둔다. <개정 19.9.27, 21.1.20, 21.9.28., 22.1.27.>
- ⑨ 감사 직속으로 청렴감사실을 둔다. <개정 15.1.15, 15.4.29, 18.1.24, 19.9.27>
- ⑩ 공사의 기구는 “별표1” 과 같고, 그 하부조직은 시행체적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06.9.19], <개정 07.2.2, 13.11.29, 19.9.27>
- ⑪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조직 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15.1.15, 19.9.27>

- 제14조(직위)** ① 직원의 직위는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본부장은 전문직 특1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15.1.15>
  2. <삭제 11.11.28>
  3. <삭제 07.9.28>
  4. 실·처·단장은 일반직 1급, 2급 또는 일반직 1급, 2급에서 전문직으로 전환된 전문위원, 임기제 전문직 가급, 일반전문계약직 가급으로 보한다. <개정 08.12.18, 09.7.1, 15.1.15, 15.12.7, 19.9.27>

- 5. <삭제 09.7.1>
- 6. 부장은 일반직 2급, 3급, 4급 또는 일반직 2급, 3급, 4급에서 전문직으로 전환된 전문위원, 임기제 전문직 나급, 일반전문계약직 나급으로 보한다. <신설 10.1.25, 개정 15.12.7, 15.12.31, 19.9.27>
- ② 제1항의 각 호의 직위는 내부 또는 외부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9.8.26, 02.2.4, 03.3.13, 04.1.13, 04.7.5, 05.4.6, 06.9.19, 07.9.28, 08.11.11>
- ③ 1인 1직위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동태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1인 2직위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15.1.15>

**제15조(정원)** 공사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임시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05.4.6, 별표 개정 10.3.31, 10.10.13>

**제15조의2(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사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직 및 기술직의 4·5·6급에 해당하는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직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 그 승진된 자가 근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개정 05.8.18, 13.12.24>  
[본조신설 02.2.4]

**제15조의3(직종전환에 따른 정원관리)** ① 사장이 인사관리상 필요에 따라 일반직 직원을 전문직 직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전환된 직원 등의 정원활용은 총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본조신설 13.12.24]  
②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된 정부의 지침 등에 따라 확정·통보된 별도 채용인력의 인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26>

## 제 4 장 직 무 분 장

**제16조(업무분장)** 본부의 업무분장은 “별표3”과 같으며, 그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06.9.19], <개정 07.2.2, 08.12.18, 09.7.1, 10.10.13, 10.12.29, 13.11.29, 15.1.15>

**제16조의2** <삭제 05.4.6>

**제16조의3** <삭제 05.4.6>

**제16조의4** <삭제 05.4.6>

**제17조** <삭제 06.9.19>

**제18조** <삭제 06.9.19>

**제19조** <삭제 06.9.19>

**제19조의2** <삭제 05.4.6>

**제20조** <삭제 06.9.19>

**제21조** <삭제 06.9.19>

**제22조** <삭제 06.9.19>

**제23조** <삭제 06.9.19>

**제24조** <삭제 06.9.19>

**제25조** <삭제 06.9.19>

**제26조** <삭제 06.9.19>

**제27조** <삭제 06.9.19>

**제28조** <삭제 06.9.19>

## 제 5 장 보 칙

**제29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이동 05.4.6>

제30조(특명사항) 이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에 불구하고 직원이 사장으로 부터 특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수명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조이동 05.4.6>

제31조(사업소 등) ①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소, 위원회 및 전문 연구기구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소, 위원회 및 전문연구기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이동 05.4.6>

제32조(파견자보직) 사장은 공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조이동 05.4.6>

제33조(기구 변동 등에 따른 명칭 등)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명 등의 변경사항은 타규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08.12.18>

부 칙<97.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98. 2.25>

이 규정은 1998. 2.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17>

이 규정은 1998. 8.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11>

제1조 이 규정은 1998. 12.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 정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99. 8.26>

이 규정은 1999. 8.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3.31>

이 규정은 2000. 3.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1. 2>

이 규정은 2002. 1.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무역부 조직 및 인원 6명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분장은 개정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02. 12. 4>

이 규정은 2002. 12.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3.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8.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 13>

이 규정은 2004.1.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3. 4>

이 규정은 2004.3.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7.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4. 6>

이 규정은 200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8.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9.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변동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다른 사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구명칭, 직위 등이 이 규정에 의한 기구명칭, 직위 등과 다른 경우에

는 이 규정중 해당 기구명칭, 직위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07. 2.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9.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1.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2.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3.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7.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0.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1.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2. 05>**

이 규정은 인사조치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6. 21>**

이 규정은 201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11. 29>**

이 규정은 인사조치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의3 후단의 전문직으로 직종 전환된 직원의 정원관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5. 1. 15>**

이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4. 29>**

이 규정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1. 1>**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12. 31>**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 및 정원)**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센터 별도 조직에 7명의 정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두며, 이후 기간 연장 등 운영방법은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부 칙<16. 12. 28>**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9. 28>**

이 규정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1. 24>**

이 규정은 201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9. 10>**

이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부칙 제3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시조직)**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센터 별도 조직에 7명의 정원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둔다.

**부 칙<19.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의 정원)** 교통본부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정원(계약직)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두며,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계약직 가급, 부장은 계약직 가급 또는 나급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19. 5. 8>**

이 규정은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 및 정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1센터 별도 조직에 7명의 정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둔다.

**부 칙<19. 8. 26>**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9. 27>**

이 규정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 및 정원)**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센터 별도 조직에 7명의 정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둔다.

**부 칙<20.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 및 정원)** ① 공사에 한시조직으로 교통본부를 두고 교통본부 운영을 위하여 14명의 정원(계약직)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두며,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계약직 가급, 부장은 계약직 가급 또는 나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전략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를 두고 경기도 공공건설센터 운영을 위하여 1센터 별도 조직에 12명의 정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둔다.

**부 칙<20. 1. 20>**

이 규정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9. 28>**

이 규정은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부칙 제3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시조직의 정원)** ①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센터 별도 조직에 7명의 정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둔다.

②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1센터 별도 조직

에 7명의 정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둔다.

③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센터 별도 조직에 12명의 정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둔다.

**부 칙**<22. 2. 24.>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6. 3.>

이 규정은 2022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제13조 관련)】 <개정 98.2.13, 98.8.17, 98.12.11, 99.8.26, 02.2.4, 03.3.13, 04.1.13, 04.3.4, 04.7.5, 05.4.6, 06.9.19, 07.2.2, 07.9.28, 08.12.18, 09.7.1, 10.1.25, 10.7.27, 11.11.28.13.6.21, 13.11.29, 15.1.15, 15.4.29, 15.12.31, 16.5.9, 16.12.28, 17.9.28, 18.1.24, 18.9.10, 19.3.29, 19.5.9, 19.9.27, 20.1.29, 21.1.20, 21.9.28., 22.1.27., 22.2.24.>

## 기 구 표

사장, 감사, 6본부, 3실·19처·10단·1소·1원 \*한시조직 3센터 별도



【별표2(제15조 관련)】 <개정 98.2.13, 98.8.17, 98.12.11, 99.8.26, 00.9.28, 02.2.4, 02.12.4, 03.3.13, 04.1.13, 04.3.4, 04.7.5, 05.4.6, 05.8.18, 06.9.19, 07.9.28, 10.1.25, 10.3.31, 10.10.13, 12.12.21, 15.1.15, 15.12.31, 19.5.8, 19.9.27, 21.1.20, 22.1.27.>

## 정 원 표

총계	임원	일반직						연구직	전문직	임기제 전문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43	4	14	38	114	227	160	139	5	25	17

【별표3(제16조 관련)】 <신설 06.9.19, 개정 07.2.2, 07.9.28, 08.11.11, 08.12.18, 09.4.1 09.7.1, 10.1.25, 10.7.27, 10.10.13, 10.12.29, 11.11.28, 12.12.05, 13.06.21, 13.11.29, 15.1.15, 15.4.29, 15.12.31, 16.12.28, 17.9.28, 18.1.24, 18.9.10, 19.9.27, 20.1.29, 21.1.20, 22.2.24.>

**본부별 업무분장표**

구분	업 무 내 용	관장부서
경영기획본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영목표 수립, 중장기 경영계획, 창의혁신</li> <li>2. 조직, 성과관리, 일자리 창출관련 전략수립 및 관리 총괄</li> <li>3. 국회, 도의회 업무</li> <li>4. 홍보, 고객만족, 사회공헌, 민원관리</li> <li>5. 인사, 인사제도, 노무, 복리후생 교육</li> <li>6. 회의체 운영, 행사, 이전, 사무관리, 사옥관리</li> <li>7. 사업계획 및 예산, 투자심의, 부채관리, 심사분석</li> <li>8. 사업일정관리, 계약실적 관리</li> <li>9. 회계, 세무, 자금, 자산관리, 지출, 계약</li> <li>10. 경영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콜센터 운영</li> <li>11. 사규·소송 등 법무</li> </ol>	<p>경영기획처                      혁신인사처                      총무관리처                      재무관리처                      인재개발처                      법무실</p>
전략사업본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창업지원센터, 복합창업 임대단지 등 신사업모델 개발</li> <li>2. 사업기획·신규사업 발굴·조정·통제·연구(해외사업 포함)</li> <li>3. 정책사업 전략수립, 협약체결</li> <li>4. 신규사업 후보지 조사, 타당성 분석, 수지분석</li> <li>5. 토지 판매전략 수립 총괄, 원가산정 및 공개, 매각·임대</li> <li>6. 기본주택 모델 및 제도 개선, 사업추진 업무</li> <li>7. 건설기준수립, 설계(변경) 심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공모심사</li> <li>8. 개발사업 환경, 에너지, 기계, 전기 조정 업무지원 총괄</li> <li>9. 원가절감계획수립·조정, 견적기준·단가 등 원가기준 설정</li> <li>10. 공사 현안 및 사업관련 개선방안 연구 총괄                      - 시장동향 분석 및 현안·신성장동력발굴·미래사업 연구 등</li> <li>11. 자산관리회사(AMC) 관련업무 총괄</li> </ol>	<p>사업기획처                      판매총괄처                      주택추진단                      기본주택기술처                      건설기준연구소                      도시주택연구부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p>
주거사업본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건설·임대사업 총괄(건설형 임대주택사업 포함)                      - 사업승인, 설계, 발주, 상품개발, 현장관리 등</li> <li>2. 임대주택 정책지원, 제도개선, 공급, 운영, 자산관리</li> <li>3. 3기 신도시 주택건설사업 총괄</li> <li>4. 사회주택 정책사업 총괄                      - 사업공모(평가·선정), 토지 매입·임대, 후보지 발굴, 금융협약, 기본계획 수립 등</li> <li>5.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주거복지사업 총괄</li> <li>6. 주택관리, 입주점검, 공사관리 및 하자·민원 총괄</li> <li>7. 행복주택 정책사업 총괄                      - 후보지발굴, 사업승인, 설계, 발주, 공급, 현장관리 등</li> <li>8. 주택 판매전략 수립, 원가산정 및 공개, 매각, 임대</li> </ol>	<p>주택사업처                      미래주택사업처                      주거복지처                      주택관리처</p>
도시개발본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기 신도시 업무 총괄</li> <li>2.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사업(광명 등) 추진</li> <li>3.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계획·설계·시공, 사업관리</li> <li>4. 공공참여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li> <li>5. 보상계획·기준수립, 용지의 취득·보상, 보상제도 기획(3기 신도시 등)</li> <li>6. 보상수탁사업</li> </ol>	<p>신도시기획처                      하남사업단                      용인사업단                      광명시흥사업단                      도시재생처                      신도시보상처</p>
경제진흥본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 계획, 조성, 인허가, 인수인계, 사후관리 등</li> <li>2. 민관합작·출차사업 관리 및 자산관리(사옥 제외)</li> <li>3. 수탁사업 총괄</li> <li>4. 택지사업 총괄(등단, 고덕, 광고)                      - 계획, 조성, 인허가, 인수인계, 사후관리 등                      - 융합타운 및 도청사건립 대행개발</li> <li>5. 판교테크노밸리 사업 총괄                      - 계획, 건설, 인허가, 공급, 사후관리 등</li> <li>6. 도시개발사업(안양, 광주 등)</li> <li>7. 보상계획·기준수립, 용지의 취득·보상, 보상제도 기획</li> <li>8. 보상수탁사업</li> </ol>	<p>산업단지처                      판교사업단                      교차사업단                      지역사업처                      복합사업처                      보상처</p>
균형발전본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부균형개발 정책사업 총괄 및 신규사업 발굴</li> <li>2. 고양지역 사업총괄(도시개발사업 등)                      - 계획, 조성, 인허가, 인수인계, 사후관리 등</li> <li>3. 다산신도시, 남양주영속 사업 총괄</li> <li>4. 본부내 판매전략 수립, 원가산정 및 공개, 매각·임대</li> </ol>	<p>균형발전처                      남양주사업단                      고양사업단</p>
(사장직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서실 운영 총괄, CEO일정관리 및 의전</li> <li>2. 품질 및 안전관리, 재난, 방재, 시공평가, 부실벌점</li> </ol>	<p>비서실                      안전품질단</p>
감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수감 업무</li> <li>2. 윤리경영, 사정업무</li> <li>3. 공직자기감, 부패방지, 공직자재산등록 업무</li> </ol>	<p>청렴감사실</p>

【별표4】 <삭제 21.1.20>